

의안번호	2220456
의 퇴 인	이훈기 의원
회 답 일	2026. 9. 23.
추 계 번호	26F3940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의 최저한도 규정 등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63조 (유가증권 등의 평가)	○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의 최저한도 규정 등 -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%(자산평가최저주식가액) - 단, 계속적 손실, 자본잠식, 회생절차, 구조조정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법인에는 미적용 - 현행 중소기업을 제외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(20%)는 폐지
2	안 제73조 (물납)	○ 상속세 물납 대상 재산 대상 확대 -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대상에 포함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3조 (유가증권 등의 평가)	○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호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73조 (물납)	○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호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상장주식 평가의 최저한도를 도입하고,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며,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상속세의 변화가 예상됨

-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의 상장주식 평가의 최저한도를 도입하는 등은 세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, 주식평가의 할증 폐지 등은 세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여 세수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[표 1] 현행 및 개정안의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평가방법 비교

구분	현행	개정안
상장주식	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(시가평균액) × 120%	① 시가평균액 ≥ 자산평가최저주식가액: 시가평균액 ② 시가평균액 < 자산평가최저주식가액: 비상장주식 평가액 ※ 단, 자산평가최저주식가액 미달시 자산평가최저주식가액으로 규정
비상장주식	보충적 평가액(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) × 120%	보충적 평가액(할증없음)
할증평가 제외	중소기업, 중견기업, 3년 이상 계속 결손금 법인 등(대통령령)	할증평가 폐지
다단계 보유 상장주식	상위 법인 순자산가치 산정 시 보유 상장주식은 시가평균액으로 반영	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인 자회사·손자회사 등 상장주식에 제3항을 단계별로 준용
평가하한 적용 배제	—	계속적 손실, 자본잠식, 경영정상화 약정, 회생절차, 국가 추진 구조조정·사업재편계획 이행 등(대통령령)
물납	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에서 제외	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 물납 허용
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상속개시 및 증여시점과 그 대상이 되는 주식수량, 평가가액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순자산가치, 다단계 출자구조에 있는 법인의 상장주식 보유, 계속적 손실 등으로 적용배제되는 법인수, 주식 할증평가 발생 등을 예측하여야 하나, 기초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